

# OECD 加入과 경제적 환경변화



한 홍 렬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目 次 ■

1. OECD의 기구적 특징과 운영방식
2. 우리나라의 OECD加入 추진의 배경
3. OECD 가입에 따르는 의무사항
4. OECD 가입과 경제환경의 변화
5. 맺는말

## 1. OECD의 기구적 특징과 운영방식

우리나라는 올해들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經濟協力開發機構)와 本格的인 加入協商을 進行해 왔으며 7월중 최종협상을 거친 후 年内 加入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加入을 앞두고 활발하게 進行되어온 찬반논쟁이 이제는 加入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따른 대책에 대한 토론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OECD의 성격과 OECD 가입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OECD는 그 起源이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즉 전후 Europe의 經濟復興을 위한 마샬플랜의 효과적인 집행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체로 출발하였다. 이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여타 지역의 선진국이 가입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형태를 갖추었다. OECD 회원국들은 전체적으로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추므로써 세계경제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OECD는 相互協助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단체라는 점에서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나 EU 및 NAFTA와 같은 地域間 協定(Regional Agreements)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 즉, 前者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들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한다면, 後者는 일정한 협정을 맺고, 이의 준수를 의무로 하는 협정체 또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OECD는 오히려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유사한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은 일정한 의무의 준수보다는 가입의 자격을 갖춘 국가끼리의 정책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의를 도모하고 있

다. OECD의 이러한 協議體的 성격은 비록 특정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강제성을 결여함으로써 추진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갖게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世界經濟, 또는 회원국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협의를 가능케함으로써 정책의 장기적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의 운영방식은 이상과 같은 機構的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모든 意思決定은 합의를 기본으로하며 반드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정국의 준수여부를 전제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물론 각종 정책협의 과정에서 회원국간의 討論은 정책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각 회원국에 대하여 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규정의 준수를 이끄는 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OECD의 운영방식은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접근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OECD의 경우에도 여타 기구와 마찬가지로 MFN(Most Favored Nation, 最惠國待遇)과 NT(National Treatment, 內國民待遇)를 원칙으로 한다. 最惠國待遇란 당연히 회원국간에는 비회원국보다 경제적 조치에 있어서 더 나은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內國民待遇란 회원국 경제주체와 내국민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원칙은 WTO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經濟的 自由化조치를 회원국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OECD에서는 점진적 자유화 역시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178개에 이르는 OECD규약을 각국의 사정에 맞게 준수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OECD가 기본적으로 政策協議를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유화 규약의 내용이 서비스교역, 자본 및 외환거래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하고 경제적 파장의 정도가 심한 것이어서 예외

의 인정없이도 효과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는 기능별로 2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위원회로는 經濟政策委員會, 經濟動向檢討委員會, 貿易委員會, 資本移動 및 貿易外去來委員會, 金融市場委員會, 國際投資 및 多國籍企業委員會, 教育委員會, 環境委員會, 雇傭安定 및 社會問題委員會 등이 있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주제별로 심도있는 토의와 연구를 거친 후 각종 채널을 통하여 반영하는 경로를 밟게 된다. 예컨대 UR협상의 경우, 서비스교역협정(GATS)과 知的財產權協定の 채택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슈들은 이미 OECD에서 오랜동안의 논의를 거친 것이다. 즉, OECD에서 전세계적인 서비스자유화 및 知的財產權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UR이 촉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사한 예로는 무역과 환경문제가 다시 WTO에서 논의되고 있고, 勞動條件과 무역의 연계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애초에 OECD국가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이슈들이었다.

이처럼 OECD는 世界經濟의 각종 문제를 정리하고 이를 이슈화하여 국제규범화하는데 항상 앞장서 있는 기구이다. OECD는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실시함으로써 先進國間의 이해를 조정해 왔다. 그리고 OECD는 회원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제적으로 반영하여 國際規範化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 2 우리나라의 OECD加入추진의 배경

80년대 후반들어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국가발전의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91년 제1차 경제계획심의회에서 OECD가입에 필요한 여건을 세우고 본계획의 후반기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93년 신경제 5

개년계획에서 OECD가입을 96년말로 확정함에 따라 현재 가입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富國들의 클럽이라고 간주되어온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적 지위가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韓國經濟는 아직 1인당 GDP 규모가 세계 30위권에 있지만 總 GDP규모가 1994년 현재 캐나다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호주나 네덜란드보다는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한국은 80년대 이후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무역의존도의 증가로 세계경제의 변화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WTO의 출범 이후에 세계경제질서의 변화가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國際經濟秩序의 방향에 대한 토론과 연구의 장이 될 OECD에의 가입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함께,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先進國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先進福祉國家로서 한 차원 높은단계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先進的인 제도와 틀하에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내적 이해관계와 관행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개방을 통한 개혁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성공적으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경우를 예상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일정한 부담을 지게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OECD가입과 함께 이와 일관된 내부적 改革을 일관성있게 시행함으로써 OECD가입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長期的 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의 하나로서 추진됨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OECD 가입에 따르는 의무사항

OECD가입에 따르는 義務事項은 一般的 의무사항, 勸告的 의무사항, 自由化 의무사항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같은 의무사항은 대체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엄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가입과정에서 그 준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일반적 의무사항으로서는 경제성장도모, 세계경제발전에 공헌, 개발도상국 원조 등 OECD의 일반적인 설립목적을 지지해야 하며, OECD 규정(ACTS)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며,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OECD 규정이란 OECD가 회원국에게 적용시킬 목적으로 채택한 규범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회원국의 의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OECD규정은 효력강도와 적용범위에 따라 강제적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決定(Decision)」,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는 「勸告(Recommendation)」, 강제력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회원국만 구속하는 「協定(Agreement)」, 그리고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준수를 약속한 「宣言(Declaration)」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OECD 규정은 약 178개로 결정 37개, 권고 115개, 선언 10개, 협정 및 기타 16개로 구성되어 있다. OECD에 가입하려면 방대한 OECD 제 규정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규정의 성격과 취지, 그리고 각국의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留保 또는 適用免除가 가능하다.

OECD 예산은 일반경비로서 OECD 가입국

의 공통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제1부 비용과 이해 당사자국만이 부담하거나 특별수입에 의해 충당되는 제2부 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전회원국이 부담하는 제1부 비용에 대한 각국 분담금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GNP에 비례한다. 어느 회원국도 해당 예산 총액의 25% 이상 또는 0.1% 이하를 부담할 수 없는데 매년 0.75% 이상 증

감할 수 없다.(단, 미국은 25%, 아이슬랜드 및 룩셈부르크는 0.1%로 고정되어 있다.) OECD의 분담금 산정기준에 의한 '93년도 우리나라 분담율을 산정해 보면, 1부 사업은 1.32%, 2부 사업은 참가사업별로 1.30%에서 2.79%로 나타났다. 둘째, 勸告的 義務事項으로서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의 이행하고 저개발국가에 대

OECD 양대 자유화규약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자본거래 자유화 규약
a) 사업활동 : 수선, 조립, 가공, 기술지원, 공사계약, 저작권, 상표 및 발명, 급료 및 임금	a) 직접투자 : 기업, 자회사, 지사의 설립, 확장 및 자본참여, 5년 이상의 대부
b) 무역 : 수수료 및 중개료, 창고저장 및 보관, 통관, 관세 및 수수료	b) 직접투자의 청산
c) 운송 : 해상화물, 내륙수로화물, 육로운송, 항공운송, 항만 용역	c) 부동산거래 : 신축, 매입, 매도
d) 보험 :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적하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d)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 : 사모, 공모에 의한 발행, 증권시장 상장, 증권의 매입, 매도
e) 은행 및 금융서비스 : 지불서비스, 결제, 청산 및 예치 서비스, 자산관리, 자문 및 대리서비스, 지점설치 및 영업조건	e) 단기금융시장거래 : 사모, 공모를 통한 발행, 상장, 매입, 매도, 대부, 차입
f) 자본소득 :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f) 기타 양허가능 금융수단 및 증권화 되지 않은 권리 등의 거래 : 사모, 공모를 통한 발행, 상장, 매입, 매도, 기타 자산과의 교환
g) 여행 및 관광	g)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 사모, 공모에 의한 발행, 증권시장 상장, 증권의 매입, 매도
h) 영화	h) 무역 및 용역거래 관련 신용
i) 개인소득 및 지출 : 연금, 이민자 송금, 신문,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 스포츠 상금	i)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j) 공공수입 및 지출 : 조세, 정부지출, 영사수입금	j) 담보·보증 및 보충금융
k) 기타 일반 : 광고, 재판비용, 벌칙금, 단체회비, 전문용역, 특허권등록	k) 예금계정거래 : 비거주자의 거주기관 설정, 거주자의 비거주기관 설정
	l) 외환거래 : 자국통화를 대가로 한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외국통화간 교환
	m) 생명보험 :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
	n) 개인간 자본이동 : 대부, 증여 및 기여, 결혼지참금, 상속 및 유증, 채무변제, 해외이주, 도박, 비거주자의 저축
	o) 자본실물이동 : 유가증권 및 자본적 권리증서, 지불수단의 반입·반출
	p) 비거주자 봉쇄자금의 처분

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OECD 가입 희망국에게는 가입전에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 이행할 것이 권고되는데, 우리나라는 1988년 12월 IMF 8조국을 이행함으로써 경상지불에 대한 외환제한 철폐, 차별적인 통화 조치의 철폐, 그리고 외국인 보유 원화 잔고의 교환성 부여 등의 의무를 수락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 1월 GATT 11조국으로 이행함에 따라 무역에 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 이외의 쿼타, 수출입허가 등과 같은 수출입 제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일부 수출입 관련조치에 대해서는 개선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또한 OECD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GNP의 0.7% 이상을 ODA(公的開發援助)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권고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 예를들면, OECD에서 開發援助를 수행하고 있는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경우에도 1991년 기준 GNP 대비 ODA의 비율이 0.33%에 불과하며 또한 DAC가입이 의무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 중에서도 ODA가 작은 그리스, 아이슬랜드, 터키 등은 DA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ODA의무사항은 상당한 융통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自由化 義務事項은 OECD의 가장 핵심적이고 엄격한 의무사항으로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양대 자유화 규약은 회원국간 서비스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촉진시켜 보다 자유로운 국제경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입협상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가능한 많이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GATT가 貿易自由化를, IMF가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수단인 外換自由化를 추구한 데 반해, 경상무역외거

래 자유화 규약은 기초가 되는 거래(계약)의 자유화까지 추구하고 있으며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EC 지침을 제외하고는 자본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위하여 다국간에 적용되는 유일한 제도이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4부 24조로 된 본문과 4개 부속서로 구성) 부속서 A의 자유화 항목은 11개의 대항목과 57개의 소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자본이동 자유화규약(4부 23조로 된 본문과 5개 부속서로 구성) 부속서 A의 자유화 항목은 16개의 대항목과 91개의 소항목으로 되어 있다.

#### 4. OECD 가입과 경제환경의 변화

OECD에의 가입은 경제환경에 巨視的, 微視的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은 가입과 함께 일정한 의무의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경제정책과 제도의 수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직접적인 경제적 환경변화를 가져 온다. 또한 OECD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의 운영방식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市場經濟體制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經濟政策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게 된다.

經濟環境의 변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國際經濟秩序를 결정하는 각종 논의의 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국제규범의 단초는 OECD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여하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도 OECD에서의 논의진행을 살펴보면 그 예상을 비교적 분명하게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이 되면 이러한 논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은 물론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험해 온 바와 같이, 국

제적 경제질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항상 受動的인 입장에서 대책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전정보의 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OECD에 가입할 경우, 적어도 정보부족이 대책수립의 制約條件으로 작용하던 상황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서 비록 한계는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논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OECD는 94년 멕시코에 이어 올해에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킴으로서 그동안 부자들의 클럽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회원국내 비교적 개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소지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선진국과의 雙務的 通商協商의 패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방어적인 차원에서 개방의 폭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OECD 가입과 함께, 선진국의 不公正 貿易事例에 대해서도 OECD의 각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OECD의 가입은 향후 정책이 成長 중심에서 국민생활의 질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이다. OECD에의 가입이 현재의 국력보다는 향후 우리가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의 과실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그러나 市場經濟體制下에서 先進福祉國家體制의 달성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달성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투자의 증가가 종래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장률 등 일부 巨視經濟指標에 얽매어온 정책

의 방향이 보다 다양한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ECD가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은 국민과 국론의 통합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경제적 환경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은 OECD가입시 178개의 제반규정의 수용과 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제도과 규정 변경을 통하여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OECD의 兩大 자유화 규약 즉,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OECD 가입에 대한 찬반논의도 본 규약의 준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상무역외거래에 대한 자유화규약은 바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규약은 WTO의 서비스교역 관련 협상과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OECD 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변화는 WTO에서 開放을 약속한 분야와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개방하고 있는 분야이외에 OECD 가입과 함께 개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TO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는 화물의 육로운 송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OECD에서 追加的인 개방을 허용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대 규약에 대한 자율화율이 30%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나 멕시코가 72.3% 그리고 OECD 평균 85% 수준을 감안하면 OECD 가입과정에서 일부규약에 대한 留保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폭적인 서비스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경상무역외거래에 대한 규약중에서 부문별 서비스교역에 대한 개방 약속은 해당 산업체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자유화는 OECD의 가입이 없다 할지라도 WTO차원에서 지속적인 개방협상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지속적 개방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OECD가입

을 통하여 開放의 幅과 一定이 빨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産業의 構造調整 過程에서 급격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조치의 강구가 절실하다.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대한 규약은 경제전반에 대하여 단시간에 광범위한 충격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91개 자유화항목중에서 11개 항목만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자본거래의 자율화율은 약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OECD 가입과정에서 자본거래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설사 OECD 가입과정에서 상당부분 유보를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가입후에는 각종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화를 위한 압력에 노출될 것이 분명하므로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OECD를 가입하지 않을 때 보다 상당히 진행될 것임은 분명하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로 가장 우려되는 것중의 하나가 이른바 國際投機資金의 대규모 유출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도의 증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의 주식시장 개방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외국 투기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이러한 소위 '핫머니'의 유출입 규모를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동안 상품시장을 중심으로 世界市場에 매우 빠른 속도로 통합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외국의 영향에 크게 노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은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원론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경제의 海外依存度 증가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가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金利가 國際金利보다 매우 높은 탓에 利子差益을 목적으로 해외자금이 유입될 경우 이자율의 꾸준한 하락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競爭力에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대규모 투기자금의 유출입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혼란은 주식시장의 본래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자유화 및 외환거래자유화는 필연적으로 換率의 變動性을 증가시키게 된다. 환율의 변동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金融產業과 中央銀行의 원활한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자본 및 외환자유화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상쇄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환율이 海外投機資金의 행태에 따라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사태가 계속될 경우, 시장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는 개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잠식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대규모 자본유입으로 인한 환율의 하락은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換率이 급변할 경우, 환율변동의 위험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생산과 판매에서 거둔 수익을 換差損에 의하여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거래에 대한 자유화폭의 확대는 개별 기업들로 하여금 환율변동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외환관리에 대한 기술적 능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OECD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서는 각국의 정책조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과정에서 각국의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게 된다. 따라서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적인 필요에 의하여 유지하여 오던 각종제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輸入先多邊化등 일부 國際規範에 맞지 않은 무역제도, 複數勞組許容 등의 勞働法 관련 사안 그리고 국제협상에 있어서의 開途國 지위의 유지 등에 대하여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수입선 다변화의 경우 비록 WTO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지만 일본과의 특수한 정치적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할 경우, 일본을 비롯한 이해관계국의 직간접적인 압력의 강화가 예상되므로 본 조치의 감축 내지 폐지일정이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수입선 다변화조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산업관계자는 보호조치의 해제가능성에 시급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複數勞組의 허용문제는 96년 총선이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95년 정부가 보여온 노동정책에 비교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무엇보다도 OECD가입에 따른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제 3자 개입금지와 같은 조치도 선진국의 관행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開途國 지위에 관한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OECD에도 개도국 회원국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어 OECD가입이 개도국 대우를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만든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OECD 가입과 여타 WTO협상에서의 지위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각종의 통상협상 등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우대를 요구하기에는 명분이 매우 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임은 분명하며 협상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5. 맺는말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GNP 총규모 기준으로 세계 11위라는 經濟的 發展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 OECD에는 현재 세계의 先進國이 모두 가입하고 있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가입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가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보다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가입의 효과를 極大化하기 위한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OECD 가입은 先進福社國家로 부상하기 위한 戰略的 수단으로 채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OECD 가입이라는 수단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타 사회경제정책도 이와 일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OECD 가입 그 자체를 하나의 목표로 간주하고 만족하게 된다면 이에 반대하는 일부의 여론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OECD 가입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OECD가 가져올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이 OECD 가입에 대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